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2003
번호	- 85

제출년월일 : 2003. 12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·정원신설 승인 및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정원 5인 승인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942인에서 947인으로 증원됨(안 제2조)
 1. 집행기관의 정원 : 927인(순증 5인)
 2. 의회사무기관의 정원 : 20인
-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정원 기한 연장
(안 조례제380호 부칙 제5조)
 - 당초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.

3. 참고사항

-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·정원 신설 승인
[도행정12200 - 3602(2003. 12. 10)호]
-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연장 승인
[도행정 12200 - 3535(2003. 12. 04)호]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942인” 을 “947인” 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922인” 을 “927인” 으로 한다.

김제시조례 제380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5조중 “2003년 12월 31일” 을 “2006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김제시조례 제380호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42인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행정기관의 정원 : 922인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0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[김제시조례380호, 2001.7.30]</p>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947인----- -----.</p> <p>1. 행정기관의 정원 : 927인 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[김제시조례380호, 2001.7.30]</p>		
<p>제5조(한시정원)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20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	<p>제5조(한시정원) ----- ---- 20인은 2006년 12월 31일----- -----.</p>		